

예 산 총 칙

2020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67,936,850	17,038,106
일반회계	532,581,151	15,977,435
특별회계	35,355,699	1,060,671
기타특별회계	35,355,699	1,060,671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33,049,175	991,475
천사섬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112,000	3,360
주택사업특별회계	13,000	390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969,149	29,074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1,212,375	36,371

제 2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2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3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 와 같다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